

수신 : 한국사회체육센터 이사장 김증하 귀하

제목 : 서울특별시 한강공원수영장 (트랙, 빙상스케이팅장, 드림) 사용료징수

공보

1.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단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

한강공원에 설치한 수영장 (트랙, 빙상스케이팅장, 드림)을 시민들이 자유롭게

사용할 수 있도록 별첨과같이 사용료를 징수하시기 바랍니다,

2. 징수한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 수영장시설운영

위탁관리계약서의 제9조(책임과 의무: 제4호)에 의거 납입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 사용료 부과 공보

(제 3 안)

수신 : 공 보 관

제목 : 시보기제 의뢰

1. 서울특별시 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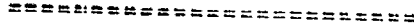
제4조의 2 (사용료) 1항에 의거 수영장 (트랙, 빙상스케이팅장, 드림)을 사용하

는 자에 대하여 별첨과같이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며, 시보기제 실시를

바랍니다.

첨부 : 한강공원 시민이용시설 사용료 부과 공보 (안) 1부

한강공원 시민이용시설의 사용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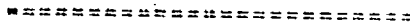
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시민 이용시설중 수영장과 수영장안의 플라스크에이트장
 및 빙상스케이트장의 사용료별 서울특별시 한강공원시민이용
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2 (서울특) 1989. 12. 24. 제100호
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.

1989.

서울특별시 장

한강공원 시민이용시설의 사용료



시 설 명	사 용 구 분	사 용 료
수 영 장	어른 1회	1,000원
	청소년 1회	800
	어린이 1회	500
플라스크에이트장	어른 1시간당	450
	청소년 "	400
	어린이 "	300
빙상스케이트장	어른 1회	900
	청소년 1회	700
	어린이 1회	5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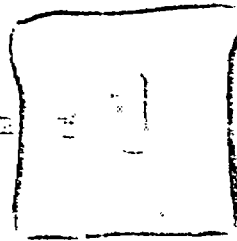
- (주) ◦ 어린이 : 만4세이상 12세이하의 자
- 청소년 : 만 13세이상 18세이하의 자
- 어 른 : 어린이, 청소년 및 만3세이하의 자외의 자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

서울특별시 한강수상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00호

를 이에 공포한다

서울특별시장



내
인
일
월

19 22년 8월 25일



서울특별시한강수상이용시설의
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

서울특별시한강수상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
같이 개정한다.

제명중 "한강수상이용시설"을 "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"로 한다.

제1조중 "수상이용시설"을 "시민이용시설(이하 '이용시설'이라
한다)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이용시설"이라 함은 다음 각 조의
시설을 말한다.

1. 수상이용시설

가. 보트, 요트, 플러팅배

나. 동력보트와 수상스키장비

다. 선박계류장

라. 인명구조선

마. 기타 수상을 이용하는 시설

바. 가류 내지 마류의 시설은 영예 적절 필요한
시설 및 장비

2. 체육시설

가. 수영장 및 수영장안의 볼락스케이프장,

빙상스케이프장과 그 부대시설 및 장비

나. 축구장, 배구장, 농구장, 야구장, 정구장, 배드민턴장,
볼락스케이프장 및 빙상스케이프장과 그 부대시설
및 장비

3. 녹지시설

가. 녹지배

나. 한강변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녹지를 위한 시설
제3조의 제1항 및 본문, 제4조 제1항, 제2항중 "수상이용
시설"을 각각 "이용시설"로 한다.

제4조의2 제1항, 제3항중 "수상이용시설"을 "이용시설"로
하고, 동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
한다.

1. 저소득층 시민, 근로청소년으로서 여가선용이나 이용의
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2. 시민의 건전생활 육성을 위하여 투르사용을 권장할
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

제5조, 제6조 제2항, 제3항, 제7조 제1항, 제8조 본문 및 동조
제2호중 "수상이용시설"을 각각 "이용시설"로 한다.

제9조중 "제4조, 제7조 및 제8조"를 "제4조, 제5조, 제7조 및
제8조"로 하고, "한강관리사업소장"을 "서울특별시한강공원
관리사업소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